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존엄의 가치를 실현하는 노인돌봄 현장

2022.10.12.

교육강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

목차

1. 인권의 이해
2. 노인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3. 노인학대 개념
4. 노인학대 유형 및 현황
5. 노인학대 신고 및 행정처분
6.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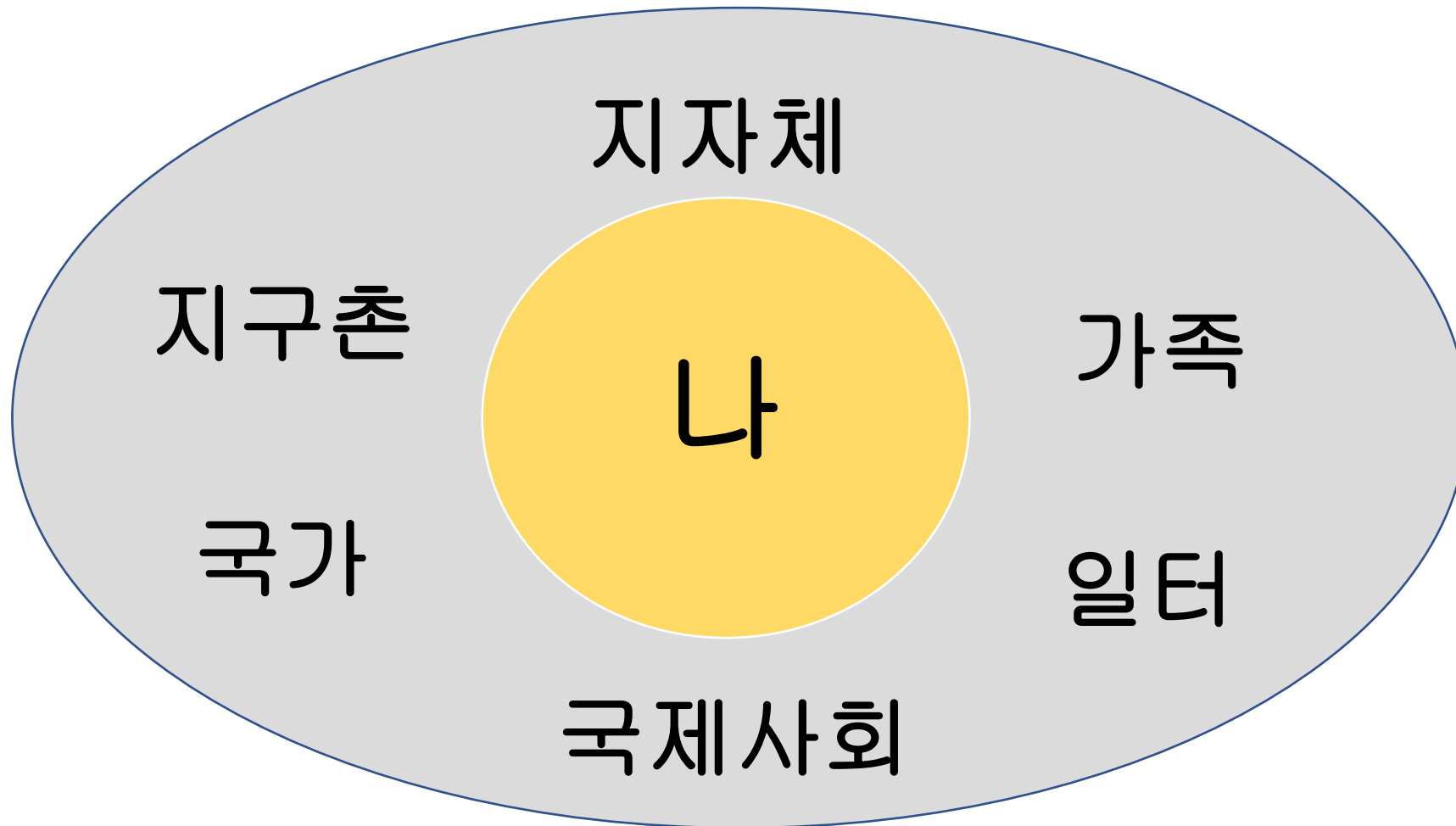
1. 인권의 이해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때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존엄한 사회



존엄

- 존엄 (尊 높을 존 嚴 엄할엄) /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함
- 계산불가능, 대체불가능, 비교 불가능
- 개인과 개인사이에서 형성된 사회에서 인간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와 책임.
- 개별적 기본권(자유권,평등권,사회권)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하는 구체적인 수단
- 존엄은 나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 어떤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춰야 존엄할 수 있을까? 가 아닌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
- 위계적, 상대적, 피라미드 계급에 의한 존중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서로의 존엄을 존중

기본적 인권

- **기본권**(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로부터의 자유)_신체자유권 등
- **사회적 기본권**(인간존엄에 대한 필수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보장과,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권리)_건강권 등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관계없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

자신이 권리를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

인권의 진전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함.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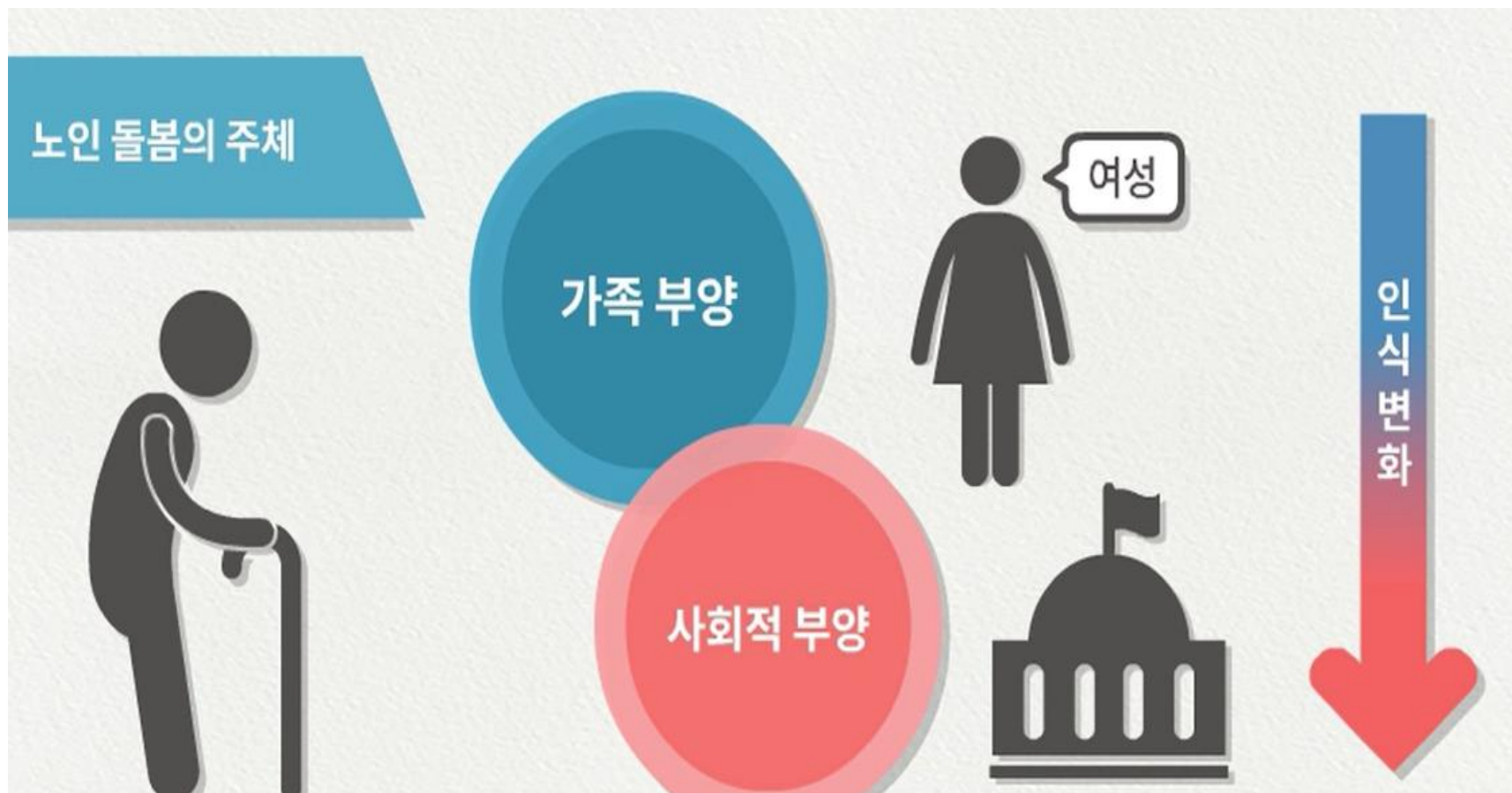
헌법 제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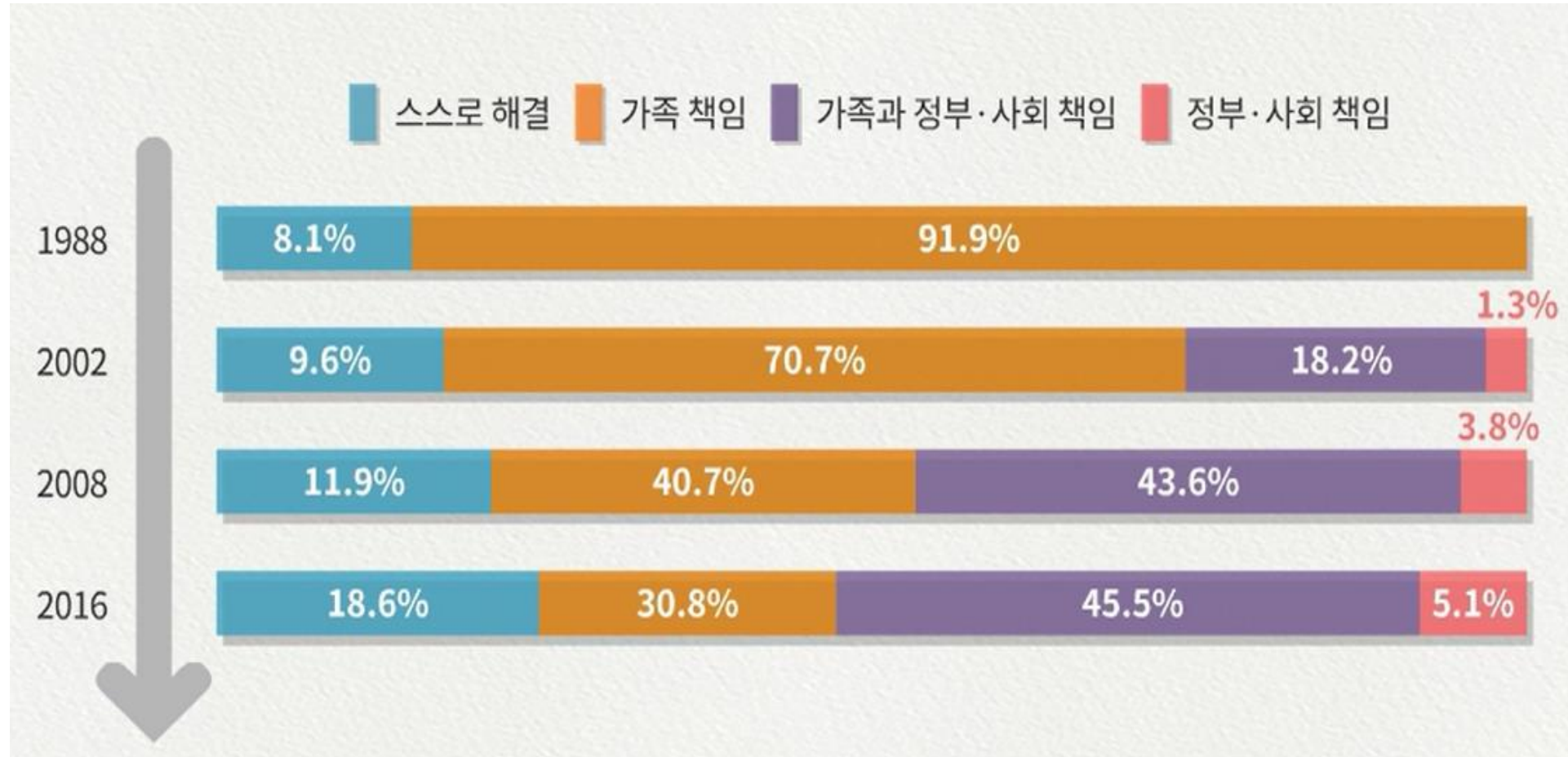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목적이 정당성, 수단/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필요한만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
- 제한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됨

2. 노인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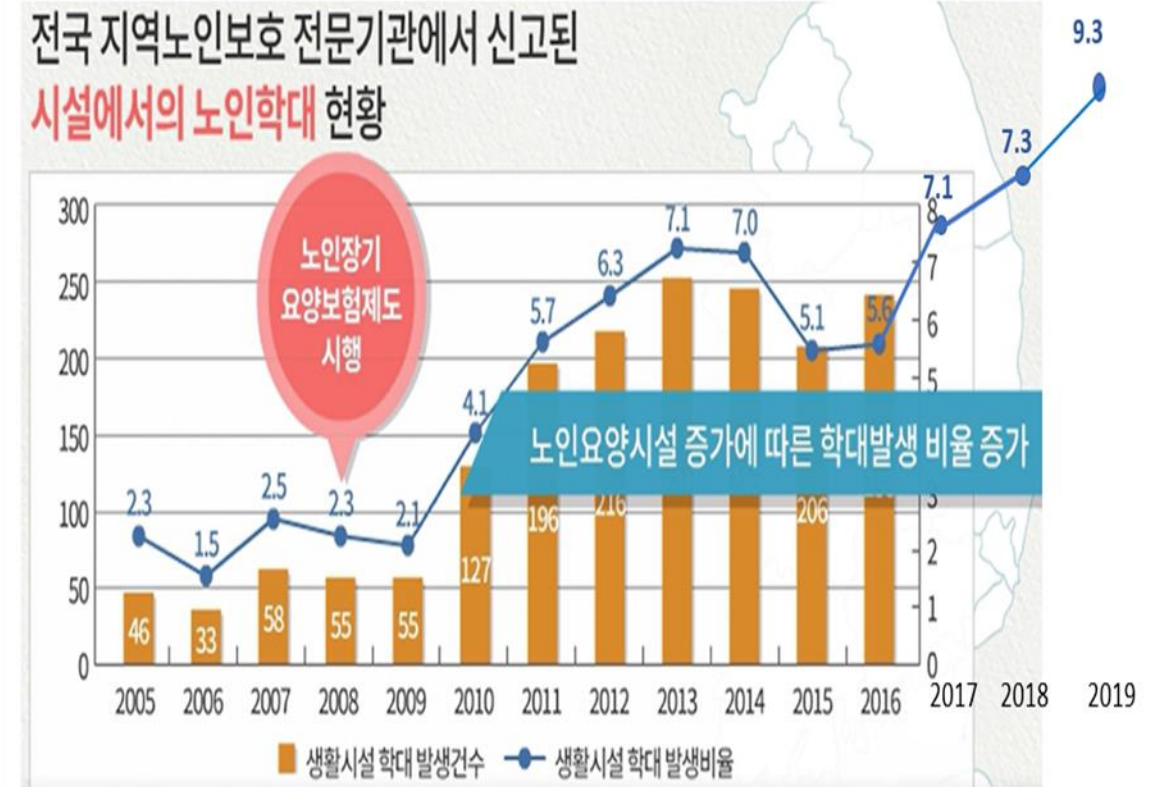


출처: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노인학대의 현황

고령화율 증가와 시설내 학대가 가파르게 증가

년도	고령화율	시설학대건수 (생활+이용시설)
2020	15.7%	613
2018	14.3%	421
2016	13.2%	254
2014	12.4%	290
2012	11.5%	251
2010	10.5%	149



3. 노인학대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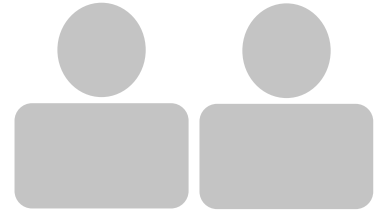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이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노력한다

제1조의 2(기본이념)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0 우리나라 노인인권 보호 제도



1.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

착취나 학대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

2.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건강과 케어에 필요한 사회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강화된 국가의
의무와 책임.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음.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자기 방임
7. 유기



노인학대 관련 용어

- 보호자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제2호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부양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1호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함.
- 노인학대관련 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해당되는 죄

● 학대행위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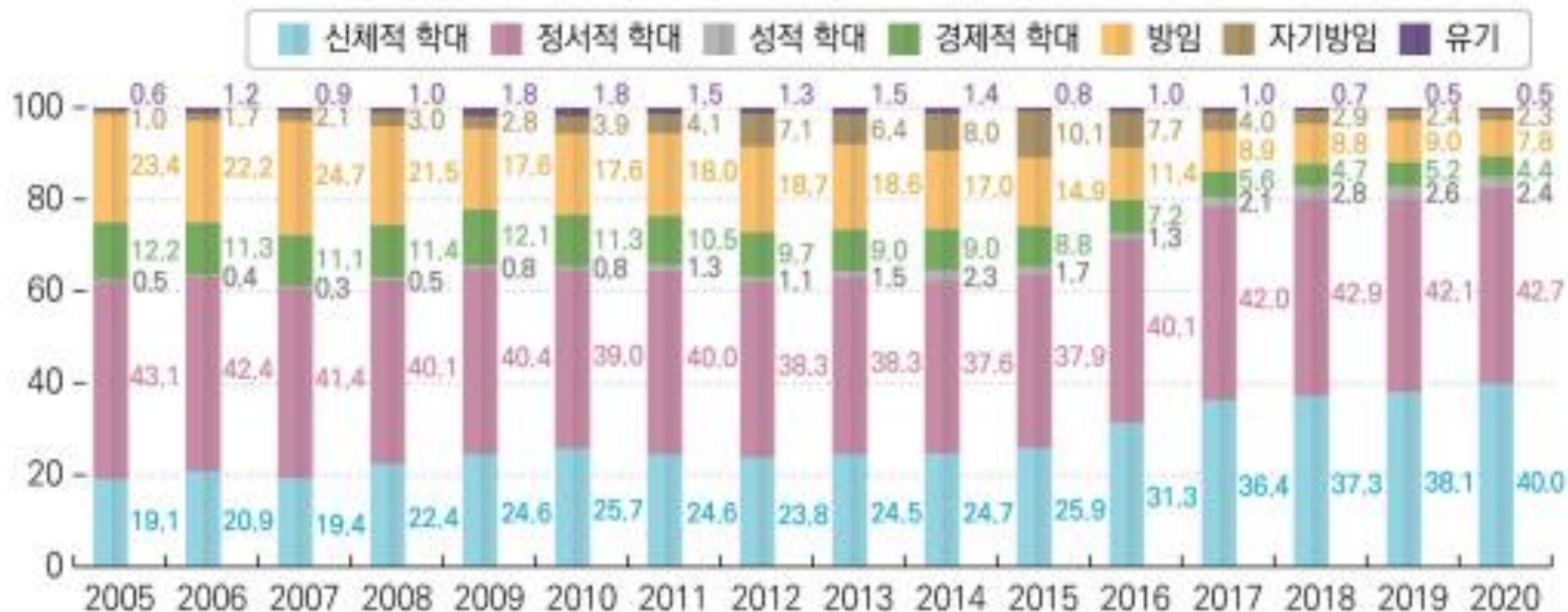
- 노인복지법 제 39조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를 통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복지법 제39조 9(금지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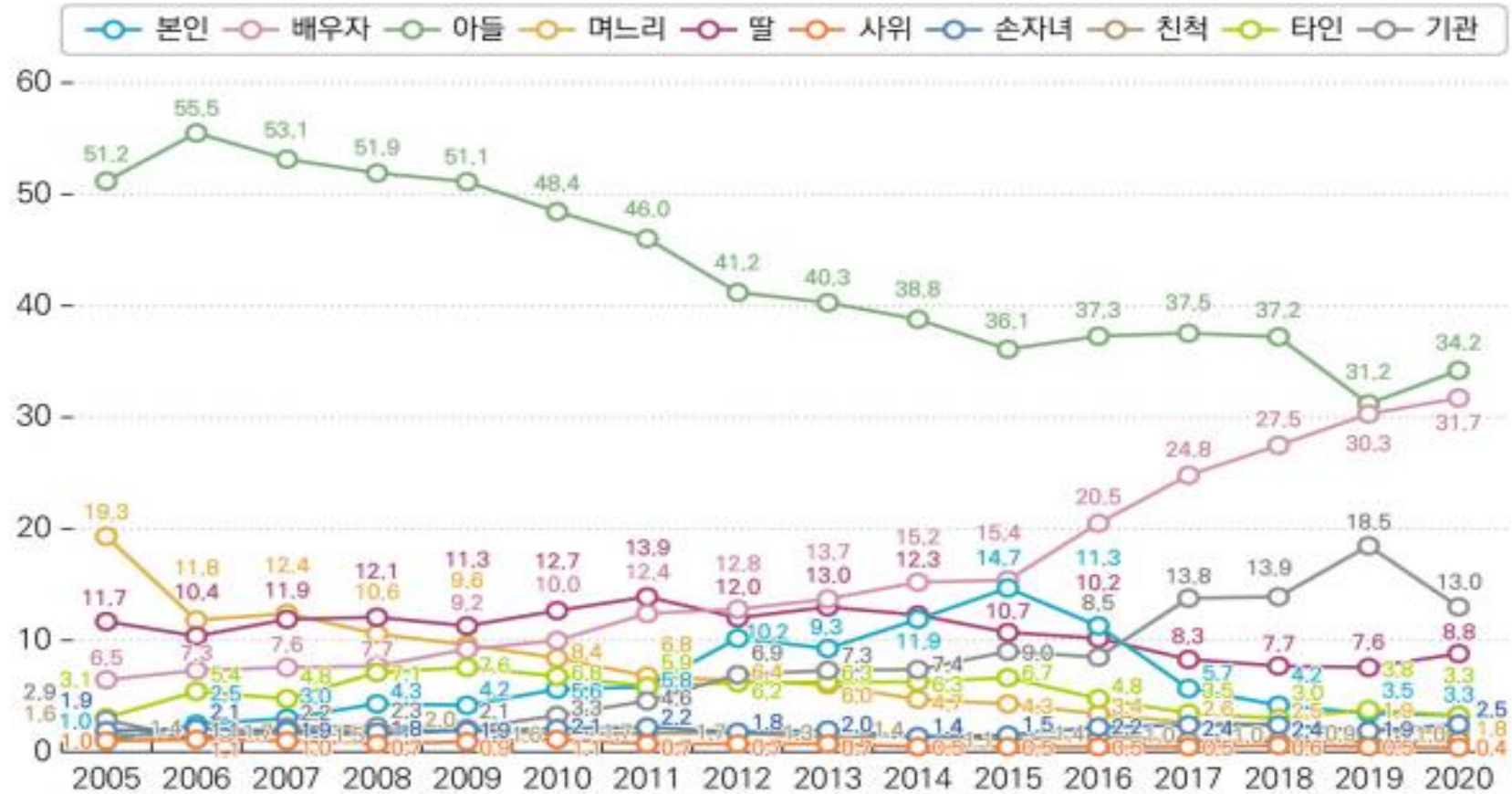
1. 노인이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4. 노인학대 유형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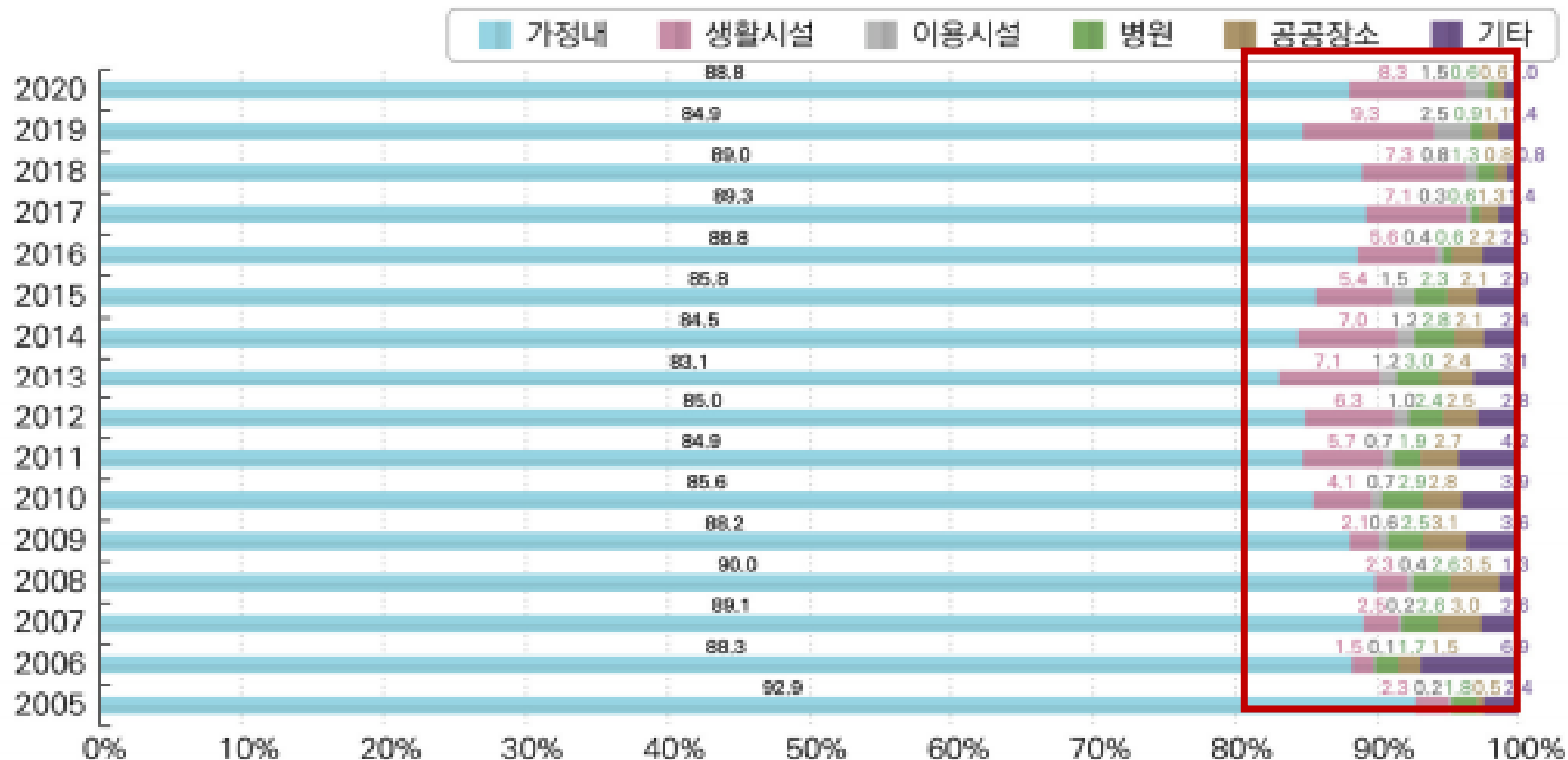
연도별 학대 유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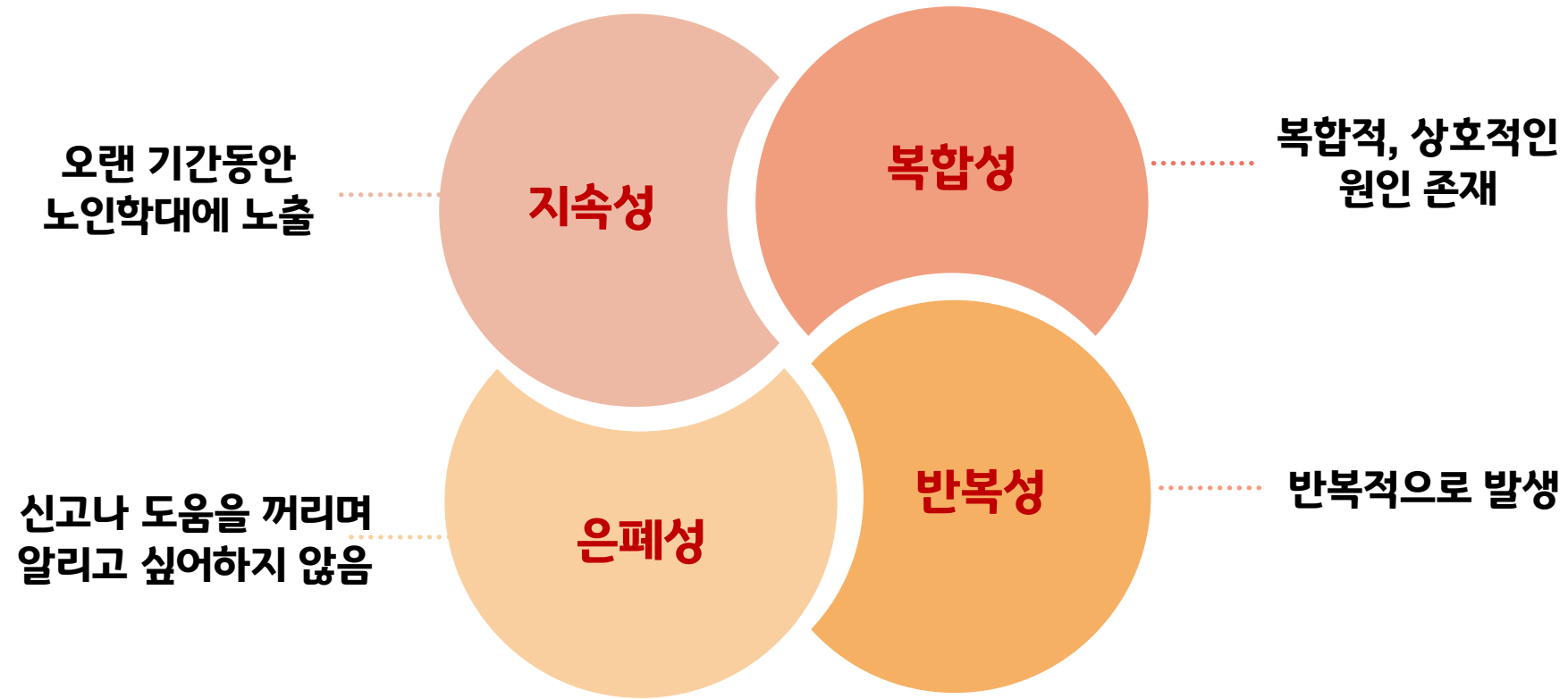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노인학대 발생공간





〈표 6-10〉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원인(N=1,432)

(단위: %)

구분	비율
노인의 개인적 기질 및 행동(치매행동, 비협조적 자세 등)	23.1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	23.8
직원의 스트레스	8.4
직원의 교육, 지식, 케어기술 부족	13.5
인력 부족과 인원배치 어려움	14.2
시설의 케어(서비스 제공) 가치관과 이념 결여	7.8
시설장이나 직원 간 갈등	0.4
사건, 사고를 묵인 또는 승인하는 조직문화	5.7
낮은 보험수가와 임금	3.1

출처: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표 6-12〉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책(N=1,432)

구분	%(1순위)
케어 기술,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	30.0
직원 스트레스와 심리상담 강화	9.9
시설 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	10.1
인력 확충	18.0
직원 인적성 검사 강화	8.1
가해자 처벌 강화	10.3
보호자, 자원봉사자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4.1
신고의무제 강화	3.0
시설장 및 관리자 대상 케어(서비스 제공) 가치관에 관한 충분한 교육	6.5

출처: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여러분의 생각은 ?

신체적 학대_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분	사례수	전혀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아님	다소 학대인것 같음	명확히 학대임	계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를 제한 한다.	1,432	0.8	10.5	44.3	44.3	100.0
이용자를 누르거나, 잡거나, 꼬집는다.	1,432	0.7	3.8	18.4	77.1	100.0
이용자를 손으로 철썩 치거나 때린다.	1,432	0.5	3.8	14.5	81.3	100.0
이용자를 발로 차거나 때린다.	1,432	0.3	3.4	11.0	85.4	
이용자를 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다.	1,432	0.5	3.6	11.9	83.9	100.0

출처: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17.2.23)

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 **신체적 학대** _창원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구압31 판결

- 학대행위자(관계):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 입소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 생활실 문을 밖에서 잠그는 행위
- **관련법률 : 사회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결과 : 개선명령처분 적법
- 해설

시설은 야간에 입소 노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생활실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
억제대 사용과 같은 신체를 결박한 것은 아니지만 입소 노인들이 자유롭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 판결은 위 학대행위로 인한 행정청의 처분(개선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국가인권위원회 “치매노인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 (’17.2.23)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 **신체적 학대** _ 수원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 구합 71766 판결

- 학대행위자(관계): 종사자
- 주요 학대행위 : 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
- **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조
- **결과** : 6개월 업무정지처분 취소
- **법원의 판단** _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 **신체적 학대** _수원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 구합 71766 판결

- 주요 학대행위 : 요양보호사들이 입소노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

- 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조

- 법원의 판단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단 판단근거

- 1) 학대행위 발생전까지 소속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 2) 외부강사 초빙하여 치매예방 교육 실시
- 3) 시설의 원장, 국장 등 매일 아침조회를 주재하여 수급자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상태를 보고 받았고, 보호자 고지, 병원 전원 등의 대처방안 의논에 노력함.
- 4) 시설장은 학대경위를 발견하여 이를 자진하여 신고함.
- 5) 피해자 보호자가 시설을 위하여 탄원서 제출

정서적 학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대유형)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위	- 존대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 -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 - 요청에 대응하지 않는다. (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한다. -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

정서적 학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대유형)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구분	사례수	전혀학대가 아님	별로 학대가아님	다소 학대인것 같음	명확히 학대임	계
이용자를 모욕하거나 욕설을 한다.	1,432	0.3	3.6	16.5	79.5	100.0
화를 내며 이용자에게 소리를 지른다.	1,432	0.3	4.3	20.9	74.4	100.0
패널티(불이익)를 주기 위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1,432	0.8	5.0	29.9	64.3	100.0

출처: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설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

정서적 학대

사례 1.	직원의 욕설, 반말 섞인 말투, 불친절한 태도(어린아이처럼 대함)
사례 2.	요양보호사에게 놀림을 당한다 (어르신 똥똥하다, 대변을 많이 싸다 등)
사례 3.	피해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가 육박 지른다.(혼나볼래!, 정말 버릇이 없는 할망구일세!)
사례 4.	때리는 시늉을 한다.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 인상을 쓰며 말한다.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위	-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고 신체 부위가 보이게 기저귀를 교체 한다.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 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 입힌다. -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목욕, 기저귀 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
-----------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행위	입소, 퇴소 시 부당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서비스 이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 노인의 통장을 자녀가 관리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한다.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증상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정적 거래가 있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 학대행위자는 노인과 함께 거주 또는 유대관계가 깊은 경향이 있음
- ▶ 노인은 통장 내역, 수급생계비와 같은 재정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 학대사례를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스스로 수분 섭취가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소홀히 한다.
- 질환에 따른 식사(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등)를 먹이지 않는다.
- 음식을 다 먹지 못했는데도 식판을 치운다.
- 화장실 이용을 제한시킨다.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 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
(옷 갈아 입히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목욕 등)
-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한다.
(냉,난방 공급 부족 / 감염,전염 등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 방치)
- 기본 물품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의 질환 및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욕창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하거나 학대사례를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위

- 식사거부 등의 행위로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노인을 방치한다.
-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을 거부하여 생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기방임 노인을 방치한다.
-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돌봄을 거부하는 노인을 방치한다.
-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위	- 시설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길거리에 내다버린다. - 소풍, 쇼핑 등 외부활동 후에 노인을 놔두고 온다. - 길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을 찾지 않는다. - 노인을 타 시설로 보낸 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증상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들이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왕래를 하지 않음.

5. 노인학대 신고 및 행정처분

■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 신속히 근무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한다.
-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한다.
-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증언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협조한다.
-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



권리침해



권리박탈

- 약자를 위한 인권과 권리가 확보되어야 함.
- 학대피해노인은 인권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킬 누군가가 필요함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인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노인 관련업무)
-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적극 참여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노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

노인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2 (벌칙))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성폭력 등 유기·방임·구걸)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4호)	

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4)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39조의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신체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성적 학대	지정취소		
방임 학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경제적 학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연대

연대란 무엇인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

인권 옹호자 연대란?

동일 목표를 추구하는 유기적 관계이며, 연대의 동일한 목표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

지역 연대를 통한 인권옹호 활동

우수 사례 제목	시설(기관)명
휴머니티드 케어로 인한 노인 삶의 질 향상	소사노인전문요양원(2020년)
냄새 없는 요양원 만들기	벤엘의 집요양원(2020년)
201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욕창 발생율 "0" 유지 비결	너싱홈베터라이프(2020년)
폭력성을 보이는 어르신의 탈 기저귀와 자립보행을 희망을 통한 자존감 찾기	차오름재활요양원(2020년)
효과적인 욕창 관리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2020년)
변화는 서서히 찾아 온다	까치울 요양원(2020년)
와상노인 탈 침대를 위한 실천 사례	부천삼광전문요양원(2020년)
냄새 없는 요양원	행복나무 요양원(2020년)
장기요양현장에서의 돌봄자와 어르신간의 상호 인권존중	영락노인전문요양원(하남시) (2020년)
고위험군 와상 어르신의 개별화된 맞춤형 욕창예방관리를 통한 전문적 케어관리	군포시립노인전문요양원 (2020년)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치매 어르신의 요양생활	실로원(2020년)
욕창 안녕(Bye bye)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2021년)
어르신이 날마다 행복하게 즐거운 생활 제공을 위한 케어관리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2021년)
인간 존엄(존중)가치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낼 수 있을까?	부천종합재가센터(2021년)
직원이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하다 _직원인권보호와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군포시노인복지관(2021년)
신나는 노년의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2021년)
와상 탈 침대를 위한 실천사례	은빛노인복지센터(2021년)

노인인권 존중실천 경진대회 우수 사례

2021년, 제 2회 경진대회 우수기관 시상



출처: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교육

존엄케어의 실천 사례

휴머니 튜드 케어(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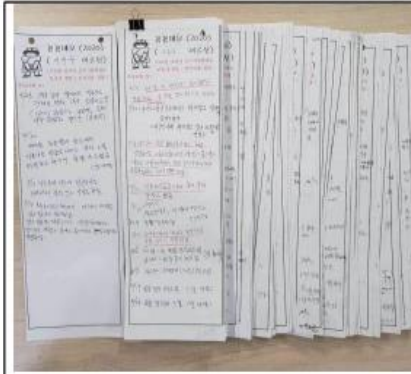


사진 1 품품 메모



사진 2 맞춤케어



사진 3 이0숙 어르신 운동 전



사진 4 이0숙 어르신 운동 후



사진 5 송0전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사진 6 강0재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존엄케어의 실천 사례

“일본 조지케이 병원 내 신체구속 폐지를 위한 운영관리 노력 ”

1. 전 병동장에게 구속폐지를 실시하도록 지도
2. 구속폐지 곤란 사례에 대해 지속적 학습회 실시
3. 사례를 검토해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환자 맞춤 쿠션, 휠체어 제작
4. 전 직원이 구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상학습 병행
5. 구속을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부터 실시
6. 골절사고를 우려해 거부하는 가족의 경우 이해를 얻을 때까지 천천히 설득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 일어서는지, 움직임은 어떤지
충분히 관찰
7. 매월 구속 상황을 운영자에게 보고하고 자료화하여 제시
8. 다른 대안이 없이 불가피한 경우는 모니터 활동 시트지 작성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주관
'노인인권존중실천 경진대회' 우수작

군포시립 노인요양센터

어르신들의 즐거운 생활을 위한

5가지 맞춤 케어!!



01

영역별 직접적인 서.비.스.

- 열린공감세상, 물리치료활동, 기능회복훈련 등



기능회복 훈련

Ex)

기본동작훈련- 균형잡기,보행훈련 등

신체기능유지훈련- 관절운동, 지구력운동 등

일상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훈련 등

02

다양한 운동환경 조성

- 물리치료사가 직접 생활실로 찾아가는 서비스



입소자의 건강상태, 관절구축정도, 통증 호소 정도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생활실로 찾아가는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

스포밴드, 필라테스링 등을 활용하여 운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03

결과 기록과 관리

요양보호사 함께
개인별로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고 기록한다!



04 뉴스포츠 활동 진행

- 요양보호사와 입소자가 함께 활동

입소자 개인별 신체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소근육을 자극하여
신체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05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의 화상통화 및 활동 사진 공유

-> 입소자의 우울감 해소 및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감 지원



일터에서 존중받는 돌봄 종사자

헌법 제 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해 법적 미비사항을 입법적 보완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완과 노력으로 해결 노력 절실

-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한 노동권 보장
-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출처 : 남우근_좋은 돌봄은 노동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돌봄을 위한 근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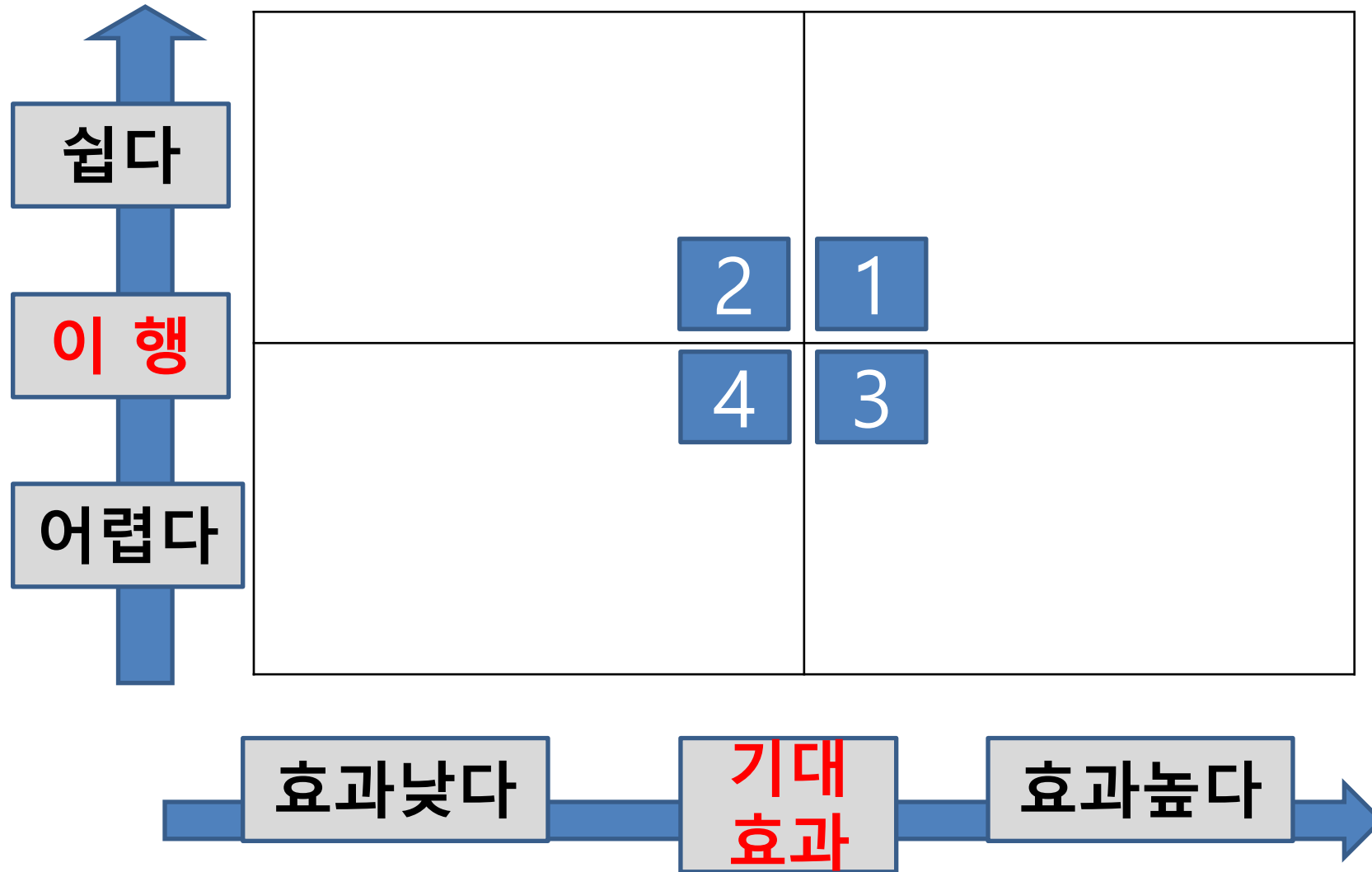
-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요양보호사에게 발생한 주요 산업재해와 예방대책 수립

- 휴게시설 설치(개정)

- 공휴일 유급제도 시행 등



인권옹호자 보호 선언

O 인권옹호자 선언 : 세계인권옹호 50주년 (1998. 12.9) , 9개 범주, 인권옹호활동 보호를 위함.

- 집단과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활동

• 인원옹호자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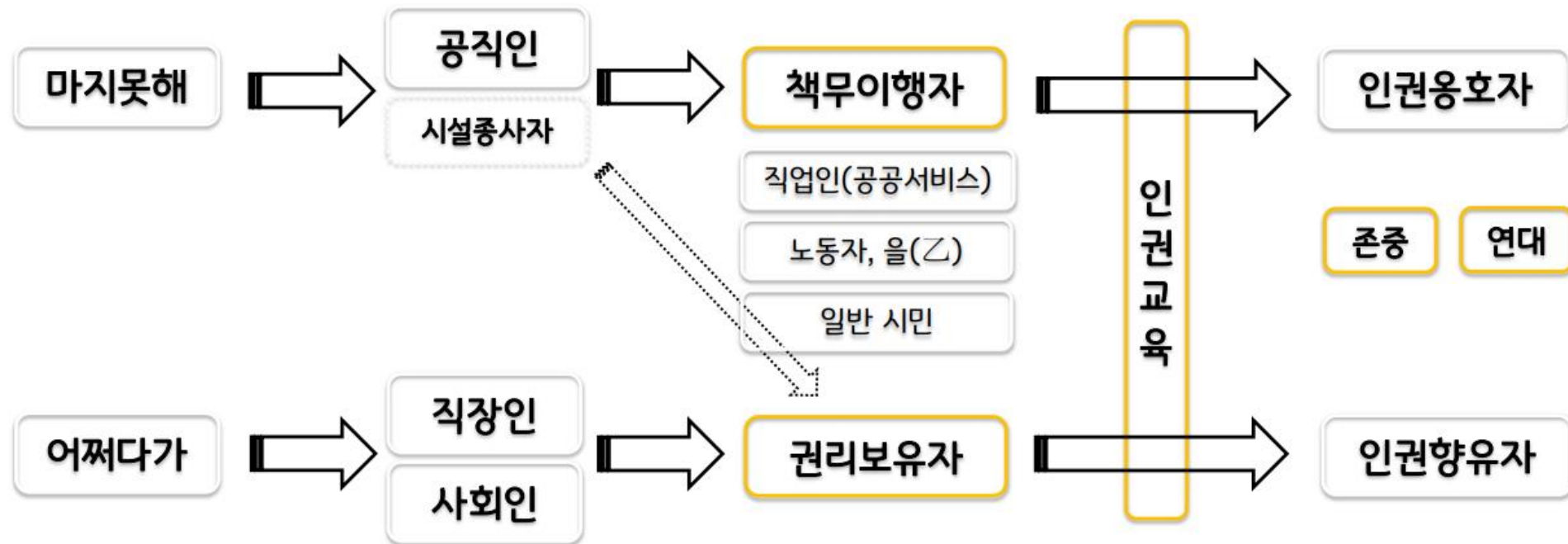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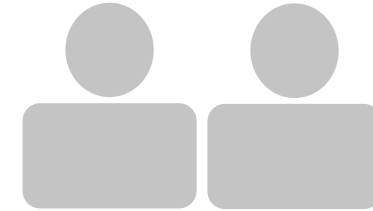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

- 고정된 직업 집단이나 개인 등에게 사전적으로 부여되고 않고, 활동의 내용
- 즉 무엇을 했는가? 의 활동 수행을 의미함.

■ 인권옹호 활동이란?

집단과 개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침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활동

우리는 인권 책무이행자(인권옹호자)





{ 서로의 행복을 소중히 함 }

2022년 10월 노인학대 예방교육 만족도 설문지 (신고의무자)

